

<쫄이덕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정오표>

개정2판발행 2022년 02월 10일

페이지	번호	수정 전	수정 후
16	(2) 제조, 수입, 판매 등의 금지. 1) 영업금지		(내용추가) ⑩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·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
17	② 유통·판매 금지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유통·판매 금지 •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·판매 금지 	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(이하 이 조에서 "동물실험"이라 한다)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(위탁제조를 포함한다)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291	004번 법령check 제24조(등록의 취소 등)	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~ 다만 , 제3호 또는 14호 ~	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~ 다만 , 제1호의2, 제3호 또는 14호 ~ (내용추가) 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·변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경우 2의3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311	001번 법령check 제15조(영업의 금지)		(내용추가) 10.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·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

공부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
앞으로 정확한 내용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「화장품법」 2021. 8. 17. 일부개정표>

[시행 2022. 2. 18.]

기존 내용	개정(수정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화장품법 [법률 제17250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화장품법 [법률 제18448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</p>
<p>제3조의2(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(이하 “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”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</p>	<p>제3조의2(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갖추어야 하며,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 등 품질·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</p>
<p>제3조의4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,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</p> <p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의4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</p> <p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3조의5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)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.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</p>

	<p>외한다. 2. 피성년후견인 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.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
<신 설>	<p>제3조의6(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)</p> <p>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신 설>	<p>제3조의7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p>
<신 설>	<p>제3조의8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.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.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</p>
<p>제5조(영업자의 의무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·기구의 관리 방법, 혼합·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, 혼합·소분되는</p>	<p>제5조(영업자의 의무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소비자에게 유통·판매되</p>

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,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·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.

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.

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이하 “영업자”라 한다)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(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)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,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, 내용,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·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·기구의 관리 방법, 혼합·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, 혼합·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,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,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·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.

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.

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(이하 “영업자”라 한다)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(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)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⑨ 제8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,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

<p><신 설></p>	<p>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</p> <p>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, 내용,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/p>
<p>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영업의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5조(영업의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·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</p>
<p>제15조의2(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)</p> <p>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(이하 이 조에서 “동물실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(위탁제조를 포함한다)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5조의2(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)</p> <p>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(이하 이 조에서 “동물실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(위탁제조를 포함한다)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24조(등록의 취소 등)</p> <p>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(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명하거나, 품목의 제조·수입 및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또는 제14호(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2의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3. ~ 1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4조(등록의 취소 등)</p> <p>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(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명하거나, 품목의 제조·수입 및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2, 제3호 또는 제14호(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·변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경우</p> <p>2.2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3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</p> <p>3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24조의2(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·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</p>
<p>제27조(청문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,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, 영업소 폐쇄, 품목의 제조</p>	<p>제27조(청문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,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,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</p>

<p>· 수입 및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취소, 영업소 폐쇄, 품목의 제조·수입 및 판매(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p>
<p>제32조(수수료) 이 법에 따른 등록·신고·심사 또는 인증을 받거나,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등록·신고·심사 또는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32조(수수료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1. 이 법에 따른 등록·신고를 하거나 심사·인증 받으려는 자 2. 이 법에 따른 등록·신고사항 또는 심사·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.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.</p>
<p>제36조(벌칙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1의2.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</p> <p>1의3.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</p> <p><신설></p> <p>2. (생략)</p> <p>2의2.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</p>	<p>제36조(벌칙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·변경등록 또는 신고·변경신고를 한 자</p> <p>1의3.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</p> <p>1의4.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·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</p>

<p>2의3.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</p> <p><신 설>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제1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</p> <p>② (생 략)</p>	<p>2의3.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</p> <p>2의4.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제16조 제1항제1호·제1호의2 또는 제4호 를 위반한 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7조(벌칙)</p> <p>① 제4조의2제1항, 제9조, 제13조, 제16조 제1 항제2호·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거나,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7조(벌칙)</p> <p>① 제3조의6, 제4조의2제1항, 제9조, 제13조, 제16조 제1항제2호·제3호 또는 같은 조 제 2항을 위반하거나,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 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</p> <p>1의2. ~ 3. (생 략)</p>	<p>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</p> <p>1의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과태료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 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</p> <p><신 설></p> <p>4. 제5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</p> <p><신 설></p> <p>5. ~ 7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0조(과태료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의2.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 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</p> <p>3의2. 제5조 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</p> <p>4. 제5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 한 자</p> <p>4의2. 제5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